



## 신한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

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#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
가입대상	▷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									
가입금액	▷ 최저: 1원이상 ▷최대 : DB형-제한 없음 , DC형/IRP형-5천만원까지									
가입기간	▷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1년, 2년, 3년 ▷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									
기본이자율 (연이율, 세전)	▷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※ 재예치시마다 재예치시점의 이율로 변경 적용됨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	DC / IRP <b>[해당]</b>	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								
	DB <b>[비해당]</b>	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							
이자계산방법	▷ 신규(재예치)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(원미만 절사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이자계산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복리식 (월복리)</td> <td>월 단위</td> <td>원금 × {(1+이율/12)<sup>n</sup>-1} (n 은 경과월수)</td> </tr> <tr> <td>일 단위</td> <td>(원금 + 월복리이자) × 이율/365 × 일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b>신규일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<b>만기일</b></span>  <b>[이자계산 산식]</b> 원금 × {(1+약정 이율/12)<sup>n</sup> - 1} (n은 경과월 수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→</span> </p>		구 분	이자계산식		복리식 (월복리)	월 단위	원금 × {(1+이율/12) <sup>n</sup> -1} (n 은 경과월수)	일 단위	(원금 + 월복리이자) × 이율/365 × 일수
구 분	이자계산식									
복리식 (월복리)	월 단위	원금 × {(1+이율/12) <sup>n</sup> -1} (n 은 경과월수)								
	일 단위	(원금 + 월복리이자) × 이율/365 × 일수								

이자지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만기일시지급식(월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만기처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li> <li>▷ 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PR) 또는 개인형(IPR) 퇴직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</li> <li>2.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일반중도해지 이자율 (연이율, 세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</li> <li>▷ 신규일 및 최종예치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(원미만 절사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padding: 2px;">예 치 기 간</th> <th style="padding: 2px;"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1 개월미만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보통예금이율(0.2%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1 개월이상 ~ 12 개월미만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12 개월이상 ~ 24 개월미만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약정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24 개월이상 ~ 36 개월미만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.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계약일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1개월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12개월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24개월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36개월</td> </tr> <tr> <td>보통예금이율 (0.2%)</td> <td>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 <td>약정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 <td>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예 치 기 간	이 율	1 개월미만	보통예금이율(0.2%)	1 개월이상 ~ 12 개월미만	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	12 개월이상 ~ 24 개월미만	약정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	24 개월이상 ~ 36 개월미만	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	계약일	1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	보통예금이율 (0.2%)	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	약정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	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	
예 치 기 간	이 율																				
1 개월미만	보통예금이율(0.2%)																				
1 개월이상 ~ 12 개월미만	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																				
12 개월이상 ~ 24 개월미만	약정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																				
24 개월이상 ~ 36 개월미만	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[단,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%]																				
계약일	1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																	
보통예금이율 (0.2%)	약정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	약정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	약정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						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 사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li>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5. 수탁자의 사임</li> <li>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li> <li>7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</li> <li>8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</li> <li>9. 수수료의 징수</li> <li>10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 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6개월미만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6개월이상~ 1년미만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1년이상~2년미만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2년이상~3년미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의적으로 약정이율 적용</p>	6개월미만	6개월이상~ 1년미만	1년이상~2년미만	2년이상~3년미만	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	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	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	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												
6개월미만	6개월이상~ 1년미만	1년이상~2년미만	2년이상~3년미만																		
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	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	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	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																		

분할해지 (일부해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.(단, 예금 신규당일에는 분할해지 불가)</li> <li>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.</li> <li>1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3.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</li> <li>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</li> </ul>
계약의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</li> </ul>
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/li> </ul>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등은 불가</li> </ul>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을 위반 시 <b>일정 기간 이내</b>에 금융소비자가 <b>계약 해지를 요구</b>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<b>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</b>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<b>거절사유와 함께 통지</b>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▷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<b>분쟁조정</b> 또는 <b>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</b>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<b>열람요구서를 제출</b>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▷ 금융회사는 <b>요구받은 날부터 6일이내에 자료를 열람</b>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예금해지시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</li> </ul>
연계·제휴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

### 3 |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사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■ **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, 신한저축은행 고객센터(1644-7777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shinhansavings.com](http://www.shinhansavings.com))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**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**분쟁조정**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◎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 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